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영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4년 7월 2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2월 28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 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판매기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www.syfund.co.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 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의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 코드: 71941]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70% 이하를 우량 채권 및 어음에 투자하고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가격 변동위험, 원본손실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우량 채권 및 어음에 70% 이하, 저평가 가치주 등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하는 연금저축계좌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전환형									
투자비용	구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선취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보수							
	펀드	없음	0.88%	0.60%	1.14%	0.885%	89	182	279	489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동종유형 : 국내혼합채권형(투자신탁), 2023.07.31 공시 기준)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구분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3/07/27~ 2024/07/26	2022/07/27~ 2024/07/26	2021/07/27~ 2024/07/26	2019/07/27~ 2024/07/26				
	펀드	2007-07-27	6.04	4.10	-0.04	2.64	2.50			
비교지수(%)	2007-07-27	5.16	5.08	0.74	3.50	2.87				

수익률 변동성(%)

2007-07-27

4.10

4.42

4.49

5.71

4.05

(주1) 비교지수 : KOSPI 27% + KIS중단기지수(1~2년) 63% + Call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공모-국내)

운용역

최근1년

최근2년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운용
경력년수

원주영

1974

책임
(본부장)

16 개

8,229억원

3.00%

4.66%

3.65%

4.75%

22년 9개월

심창훈

1975

책임
(본부장)

46개

24,016억원

3.65%

4.75%

3.65%

4.75%

14년

정송훈

1994

부책임
(선임운용역)

17 개

2,778억원

-

-

3.65%

4.75%

1년 3개월

박하나

1980

부책임
(팀장)

44개

24,006억원

-

-

3.65%

4.75%

15년 2개월

기준일: 2025년 01월 31일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마라톤가치본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추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하기 5개 투자신탁의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대상 펀드] -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업자	신영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5년 2월 28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3부 1. 재무정보 (29페이지) 및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4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해당 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y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yfund.co.kr)



QR코드를 스캔 해보세요.



QR코드를 스캔 해보세요.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명칭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1941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전환형(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X(해당 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용어에 관한 사항은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예정금액 10 조좌 (1 좌 = 1 원, 원본액 기준)

(주 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3.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194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년 07월 27일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최초설정
2009년 05월 22일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신영연금채권혼합투자신탁 제1호 →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2011년 03월 09일	1)연금의 지급개시 및 지급방법 변경 2)투자신탁의 전환청구 횟수 변경 3)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12.27)사항 반영 4)자본시장법에 적법하도록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정정 및 법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5)작성기준일 변경 등으로 인한 갱신
2011년 03월 15일	일반사무관리회사 신설로 인한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신설
2011년 11월 21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갱신
2012년 10월 10일	적립기간 및 연금지급기간 등에 관한 사항 변경
2013년 04월 01일	연금저축계좌 도입 관련 변경사항 반영
2013년 12월 18일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갱신
2014년 01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15년 02월 03일	법 시행령 개정 사항, 작성 기준일 변경 및 모집예정금액 확대에 의한 갱신
2015년 04월 24일	비교지수 변경,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대상 환매조건부매수 추가, 채권평가회사 추가,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 보수율 오기 정정
2016년 01월 11일	운용인력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2016년 07월 02일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년 07월 20일	채권투자비중 상향 조정, 펀드 편입자산 매매·평가차익 분배유보 적용,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2016년 07월 30일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판매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
2016년 10월 01일	운용인력 변경,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2017년 08월 24일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2017년 11월 17일	운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2018년 10월 30일	①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관련 투자비율 적용예외 사항 삭제 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③ 투자대상 내 신용평가등급 관련 사항 보완 ④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사항 보완
2019년 05월 03일	운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2019년 09월 25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19년 12월 20일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사항 보완
2020년 05월 26일	부책임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2020년 08월 19일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연환산 표준편차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2021년 04월 01일	부책임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2021년 10월 15일	①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전자증권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2년 08월 26일	①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임승현 → 박영훈, 김준영 → 고도희) 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③ 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등 문구 수정
2023년 03월 31일	① 운용보수 및 판매보수 인하 ② 투자대상자산(집합투자증권 등) 한도 변경 및 투자 제한사항 보완 ③ 투자대상자산 보완(부동산투자회사) ④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⑤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3년 09월 22일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및 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2024년 03월 29일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따른 정정
2024년 06월 21일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따른 정정
2024년 09월 12일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4년 11월 29일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따른 정정
2025년 02월 28일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따른 정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싯탁계약기간

이 투자싯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싯탁으로 별도의 싯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투자싯탁의 싯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싯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싯영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25.01.31)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공모-국내)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원주영	1974	책임 (본부장)	16 개	8,229억원	3.00%	4.66%	3.65%	4.75%	운용 경력: 22년 9개월 - 현)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
심창훈	1975	책임 (본부장)	46개	24,016억원	3.65%	4.75%			운용 경력 : 14년 - NH-CA 자산운용 채권운용 - 현)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정송훈	1994	부책임 (선임운용역)	17 개	2,778억원	-	-			운용 경력: 1년 3개월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 현) 신영자산운용 마라톤가치본부

박하나	1980	부책임 (팀장)	44개	24,006억원	-	-	운용 경력: 15년 2개월 - 알파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 한화자산운용 F사업본부 - 다올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 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운용부 - 현)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	------	-------------	-----	----------	---	---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마라톤가치본부,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 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동일 본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공모 기준) : 원주영, 2건, 99억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동 내역

운용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6.01.11 ~ 현재	심창훈
2024.06.21 ~ 현재	박하나
2024.11.29 ~ 현재	정송훈
2025.02.28 ~ 현재	원주영
2021.04.01 ~ 2022.08.25	임승현
2020.05.26 ~ 2022.08.25	김준영
2007.10.23 ~ 2024.03.28	허남권
2022.08.26 ~ 2024.06.20	고도희
2022.08.26 ~ 2024.11.28	박영훈
2024.03.29 ~ 2024.11.28	원주영
2024.11.29 ~ 2025.02.27	이철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전환형

나. 전환형 구조

- (1)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하기 5개 투자신탁의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다.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구 분	주요내용
주요투자대상	채권 : 60%이상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A-이상) 위주로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자본의 증식을 추구합니다.
주요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구 분	주요내용
주요투자대상	주식 : 60%이하, 채권 : 60%이하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재산의 60%이하 범위내로 하며, 채권 및 유동성 투자와 주식투자를 상호 균형있게 운용함으로써 이자소득과 주식투자에 따르는 자본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구 분	주요내용
주요투자대상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 90%이상
주요투자전략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자산총액의 일정부분을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주식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주요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구 분	주요내용
주요투자대상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 90%이상
주요투자전략	『신영퇴직연금가치주식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자산총액의 일정부분을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가치주)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주요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라.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형 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 및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1.지분증권(주식)	30%이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에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2.채무증권(채권)	70%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3.채무증권(어음)	40%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

		인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이하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6.금리스왑거래	100%이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7.집합투자증권 등	40%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제 1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제2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9.투자증권의 대여 주1)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10.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11.투자증권의 차입 주2)	20%이하	- 집합투자계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2.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13.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 제1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투자비용 적용예외		-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계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집합투자계약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대상 2 및 3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다만, 부도등으로 유예기간3개월이

	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주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모든 공모펀드)

나.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ETF 해당)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주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하는 행위	
2.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매일의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5. 집합투자증권 투자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2)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1)은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5)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계열회사 지분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 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7.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수익구조

가.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1)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우량 채권 및 어음 등에 70% 이하로 투자하고, 가치주 위주의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채권형)입니다.

① **채권투자:** 국채 및 통안채 중심으로 우량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합니다.

-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며, 회사채 및 어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3년간 영업현금흐름, 금융비용부담률, 자기자본이익률, 유보율 분석을 통해 투자가능 목록을 작성합니다. 운용역은 투자가능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자산을 선별/투자하여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콜, 정기예금 등 기타 유동성자산은 영업용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실질자기자본비율로 평가된 투자가능 목록 안에서 투자하여 효율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 자산배분은 듀레이션(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채권가격의 이자율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조정 및 수익률의 변동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산전체의 가중평균 잔존만기일(듀레이션)을 약 1년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② **주식투자:**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편입비율 30%이하 유지합니다.

-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

-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전략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

- 종목매도는 적정가치에 도달하였거나 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경우, 기업에 대한 전망을 바꿀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빈번한 매매를 지양

③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 유니버스 구성: 당사의 재무적/정성적 기준에 따라 선별된 유니버스 내 종목군 중에서 투자 대상종목을 선정합니다. 분기 1회 신규종목 추가 및 편입종목 삭제 등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 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정기적 운용 회의를 통해 유니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산배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자의적 자산배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의 교체매매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종목 발굴을 통한 주식선택에 집중합니다.

- 종목별 비중: 균등투자를 지향하되 시가총액 비중, 상대적 투자 매력도, 거래 유동성을 감안하여 비중 결정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OSPI 27% + KIS중단기지수(1~2년) 63% + Call 10%**

- (주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 (주2) 비교지수
- KOSPI: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여 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KIS중단기지수(1~2년)는 KIS채권평가사가 KIS종합채권지수에서 1~2년 구간의 채권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입니다.
 - Call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단기자금대차인 콜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 (주3) 선정사유: KOSPI는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복합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채권시장 중단기(1~2년)채권의 대표성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KIS중단기지수(1~2년)와 유동이 활발하고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Call금리를 선택하였습니다.

(2) 위험관리

당사는 이사회에서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관리하며, 원활한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하위 기구인 리스크관리심의 회에서 투자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측정·관리합니다. 위험관리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용부서에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산별, 펀드별 거래 한도 및 투자한도를 수시점검합니다. 각 위험별 통제를 위해 필요 시 리스크관리심의회의의 구성원들이 사후 조치 및 재 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균등투자 원칙을 토대로 분산투자를 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시장예측을 통한 편입비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매매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7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30% 이하의 수준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신고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상순자산가치 변동위험·이중가격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금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탁해지 위험	투자신탁의 경우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4등급(보통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10.26%)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고, 7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다양한 경제 변수에 수익이 변동되는 주식과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동 자산의 가치 상승 및 채권의 이자수익을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97.5% VaR 모형* 사용) >

등 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영업일의 일간 수익률만 대상으로 산출 (휴일자 미산출))

* VaR(Value at Risk) 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 상기 표상 VaR 값 00% 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

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 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1)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합니다.

(주2) 모자형 구조의 경우 자펀드는 자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3) 클래스가 구분된 펀드의 경우 모든 클래스의 펀드는 운용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4)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간접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5) ETF, 레버리지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 6)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매입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5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매입 및 환매관련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 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 (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 (D+3)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5 영업일 (D+4)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매입 및 환매관련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일부환매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수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다. 전 환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투자신탁에서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및 주식형으로 전환청구〉

채권형(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에서 **채권혼합형**(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주식혼합형**(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주식형**(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및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으로 전환청구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 에 전환	판매회사의 영업일

〈채권혼합형에서 채권형,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

채권혼합형 (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 (채권혼합))에서 **채권형**(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주식혼합형**(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주식형**(신영연금가치 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및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으로 전환청구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전환(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5영업일) 의 기준가격	한국거래소 개장일

〈주식혼합형에서 채권형, 주식형 및 채권혼합형으로 전환청구〉

주식혼합형(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에서 **채권형**(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채권혼합형**(신영연금30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주식형**(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및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으로 전환청구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3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전환(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 의 기준가격	한국거래소 개장일

〈주식형에서 채권형, 채권혼합형 및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

주식형(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 및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에서 채권형(신영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채권혼합형(신영연금60증권전환투자신탁(채권혼합)) 및 주식혼합형(신영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 전환청구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전환	한국거래소 개장일

②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하며, 판매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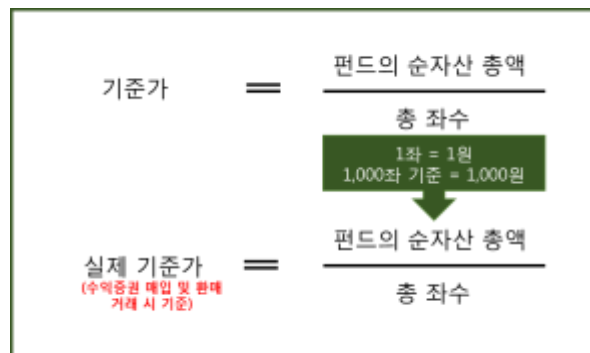
※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일부전환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 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 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가격으로 평가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③-①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 중 낮은 가격.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 (집합투자기구 설정시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대표이사(위원장), 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위험관리담당 부서장, 운용지원담당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업 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가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없음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25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0.60	
수탁회사 보수	0.02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5	
총 보수	0.88	-
기타비용	0.0054	사유 발생 시
총 보수·비용	0.8854	-
(동종유형 총 보수)	1.14	-
합성 총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 함)	0.8854	-
증권거래비용	0.0391	사유 발생 시

- (주1)기타비용은 증권 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동종유형 : 국내혼합채권형(투자신탁), 2024.07.31 공시 기준)
-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4.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4.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펀드 총보수를 제외한 기타 발생 가능한 비용의 하위 구성 내역
- 기타비용 :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위원회보수, 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후원기금),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증권거래비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중개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중개지급수수료 등)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 |
|--------|-------------------|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
| 증권거래비용 | 2,108,541 |
- ③ 금융비용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 | | |
|------|-------------------|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
| 금융비용 | - |
- ④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연환산 추정치 비율로 상기 표에 기재하였습니다.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 원]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89	182	279	489	1,114

주 1)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 년 7 월 20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 세

아래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에 대하여 조세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여 외국원천징수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① 및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①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6.5%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 단, 위 납입요건의 ②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내에서 위 표의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됨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위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 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연금외수령)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안·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수령시 과세 (특별중도해지 시 포함)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 2013.01.01. 이후 가입한 계좌의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 (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5%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1)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2)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 환매 또는 이익분 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신탁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가격 산정시 반영하는 수익
기준가격	매매차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과표기준가격	배당수익, 이자수익

(3)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① **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15.4원

② 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이므로 세금 '0'원

③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예시: 매매손실 200원 배당수익 50원, 이자수익 50원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15.4원

④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이므로 세금 '0'원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5 기(2021.07.27 ~ 2022.07.26)	신한회계법인	-
제 16 기(2022.07.27 ~ 2023.07.26)	신한회계법인	-
제 17 기(2023.07.27 ~ 2024.07.26)	신한회계법인	-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항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 15 기
	2024.07.26	2023.07.26	2022.07.26
운용자산	5,367,535,465	4,924,748,597	5,809,782,937
유가증권	4,172,079,742	4,471,223,718	4,674,190,43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5,455,723	53,524,879	135,592,505
기타 운용자산	1,100,000,000	400,000,000	1,000,000,000
기타자산	15,662,589	654,017,267	30,027,864
자산총계	5,383,198,054	5,578,765,864	5,839,810,80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05,668,092	118,348,680	15,620,670
부채총계	205,668,092	118,348,680	15,620,670
원본	4,796,826,862	5,206,451,138	5,585,396,011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380,703,100	253,966,046	238,794,120
자본총계	5,177,529,962	5,460,417,184	5,824,190,131
운용수익	365,066,434	178,733,190	-443,055,326
이자수익	143,967,664	142,524,388	74,746,487
배당수익	45,274,860	48,103,886	51,397,740
매매평가차손익	175,682,183	-11,909,856	-569,205,550
기타수익	141,727	14,772	5,997
운용비용	48,196,080	56,559,489	65,295,311
관련회사보수	47,630,019	55,987,259	64,684,169
매매수수료	271,696	251,980	250,992
기타비용	294,365	320,250	360,150

당기순이익	316,870,354	122,173,701	-508,350,637
매매회전율	67	100	223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
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7기 0원, 16기 0원, 15기 0원 발생)

(주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7기 0원, 16기 0원, 15기 0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901,560,841	1,836,845	0.10	3,124,203,688	2,989,456	0.10
주식 이외의 증권	8,050,611,500	0	0	10,055,840,092	8,884	0
합 계	9,952,172,341	1,836,845	0.10	13,180,043,780	2,998,340	0.10

(주1) 주식 중개수수료, 공모주 청약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
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5,024	866,724,261	21,186	1,034,731,540	1,549,549,510	66.78	31.98

(주1)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ETF 제외한 공모펀드-증권
펀드 유형)을 의미합니다.

(주2)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기 정보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매매회전율 관련 내용이 기재되며, 자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모집합투
자기구의 비율을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항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 15 기
	2024.07.26	2023.07.26	2022.07.26
운용자산	5,367,535,465	4,924,748,597	5,809,782,937
현금및예치금	95,455,723	53,524,879	135,592,505
현금및현금성자산	95,455,723	53,524,879	135,592,505
대출채권	1,100,000,000	400,000,000	1,000,000,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00,000,000	400,000,000	1,000,000,000
유가증권	4,172,079,742	4,471,223,718	4,674,190,432
지분증권	1,545,436,045	1,557,478,060	1,713,945,210
채무증권	2,626,643,697	2,913,745,658	2,951,390,222
수익증권	0	0	8,855,000
기타자산	15,662,589	654,017,267	30,027,864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639,277,445	15,251,467

미수이자	10,734,568	10,199,848	8,812,219
미수배당금	4,928,021	4,539,974	5,409,192
선급비용	0	0	554,986
자 산 총 계	5,383,198,054	5,578,765,864	5,839,810,801
기타부채	205,668,092	118,348,680	15,620,670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34,655,555	18,852,179	0
해지미지급금	1,154,544	0	566,365
미지급운용수수료	3,287,160	3,430,461	4,370,441
미지급판매수수료	7,889,193	8,233,124	10,197,702
미지급수탁수수료	328,720	343,035	364,187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65,729	68,608	72,827
수수료미지급금	45,544	39,104	49,148
미지급이익분배금	158,241,647	87,382,169	0
부 채 총 계	205,668,092	118,348,680	15,620,670
원 본	4,796,826,862	5,206,451,138	5,585,396,011
이익잉여금	380,703,100	253,966,046	238,794,120
자 본 총 계	5,177,529,962	5,460,417,184	5,824,190,131
부채 및 자본 총계	5,383,198,054	5,578,765,864	5,839,810,801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항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 15 기
	2023.07.27 ~ 2024.07.26	2022.07.27 ~ 2023.07.26	2021.07.27 ~ 2022.07.26
운용수익(운용손실)	365,066,434	178,733,190	-443,055,326
투자수익	189,242,524	190,628,274	126,144,227
이자수익	143,967,664	142,524,388	74,746,487
배당금수익	45,274,860	48,103,886	51,397,74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43,086,065	253,410,988	160,157,447
지분증권매매차익	120,975,797	70,132,048	110,651,294
채무증권매매차익	19,115,699	19,036,514	12,899,080
지분증권평가차익	183,606,406	163,759,311	29,714,028
채무증권평가차익	19,388,163	483,115	6,893,045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67,403,882	265,320,844	729,362,997
지분증권매매차손	56,585,334	153,548,365	323,799,938
채무증권매매차손	14,933,070	11,717,111	80,852,550
지분증권평가차손	95,885,478	99,110,432	272,168,895
채무증권평가차손	0	944,936	52,541,614

기타운용수익	141,727	14,772	5,997
운용비용	48,196,080	56,559,489	65,295,311
운용수수료	13,531,284	16,191,327	18,840,087
판매수수료	32,475,335	38,085,502	43,960,431
수탁수수료	1,352,963	1,425,480	1,569,838
사무수탁수수료	270,437	284,950	313,813
매매수수료	271,696	251,980	250,992
기타운용비용	294,365	320,250	360,150
당기순이익	316,870,354	122,173,701	-508,350,63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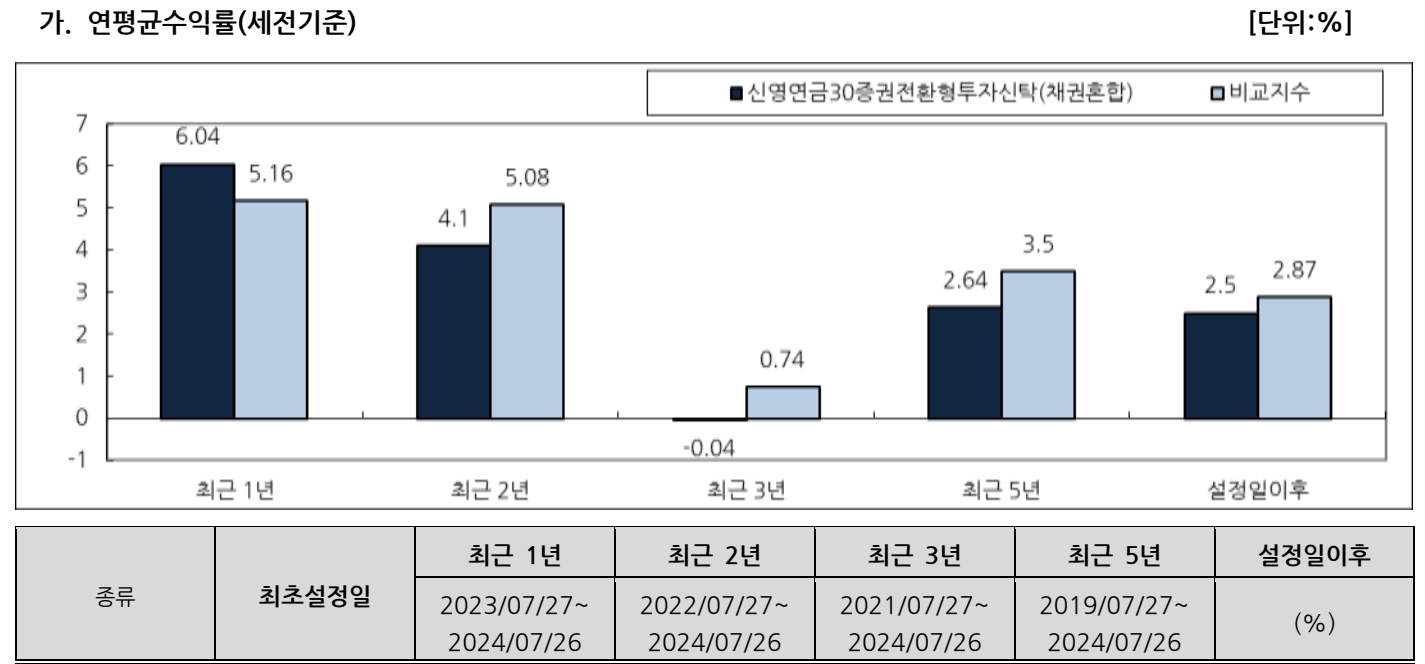
신영연금 30 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1/07/27~2022/07/26	6,108	6,911	486	531	1,021	1,124	5,585	5,824
2022/07/27~2023/07/26	5,585	5,824	360	373	739	772	5,206	5,548
2023/07/27~2024/07/26	5,206	5,460	440	475	933	1,004	4,797	5,336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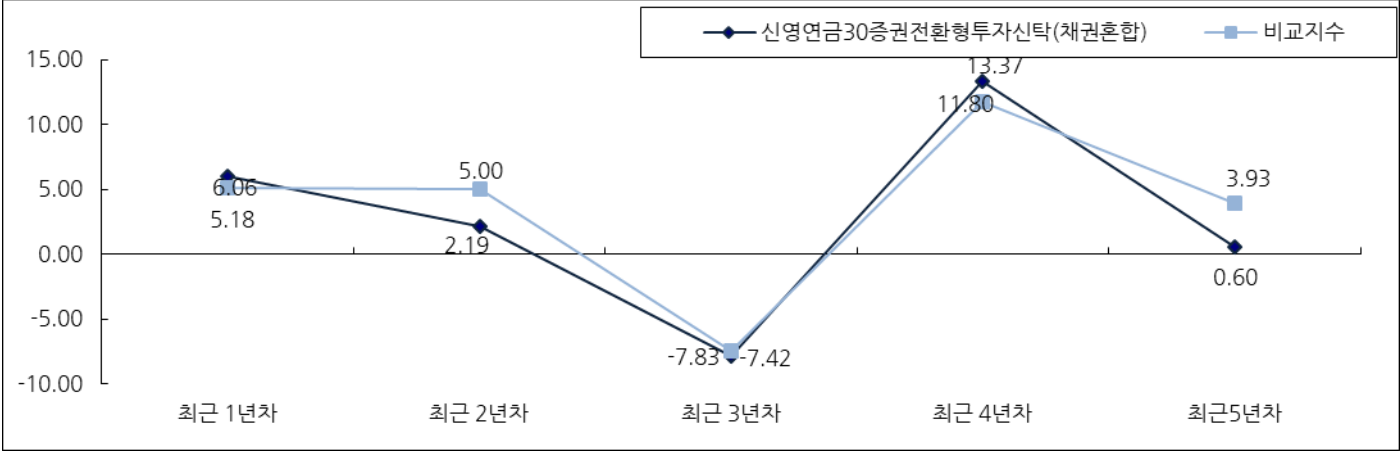
펀드	2007-07-27	6.04	4.1	-0.04	2.64	2.5
비교지수	2007-07-27	5.16	5.08	0.74	3.5	2.87
수익률 변동성(%)	2007-07-27	4.1	4.42	4.49	5.71	4.05

(주 1) 비교지수 : KOSPI 27% + KIS 중단기지수(1~2 년) 63% +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3/07/27~ 2024/07/26	2022/07/27~ 2023/07/26	2021/07/27~ 2022/07/26	2020/07/27~ 2021/07/26	2019/07/27~ 2020/07/26
펀드	2007-07-27	6.06	2.19	-7.83	13.37	0.6
비교지수	2007-07-27	5.18	5	-7.42	11.8	3.93

(주 1) 비교지수 : KOSPI 27% + KIS 중단기지수(1~2 년) 63% +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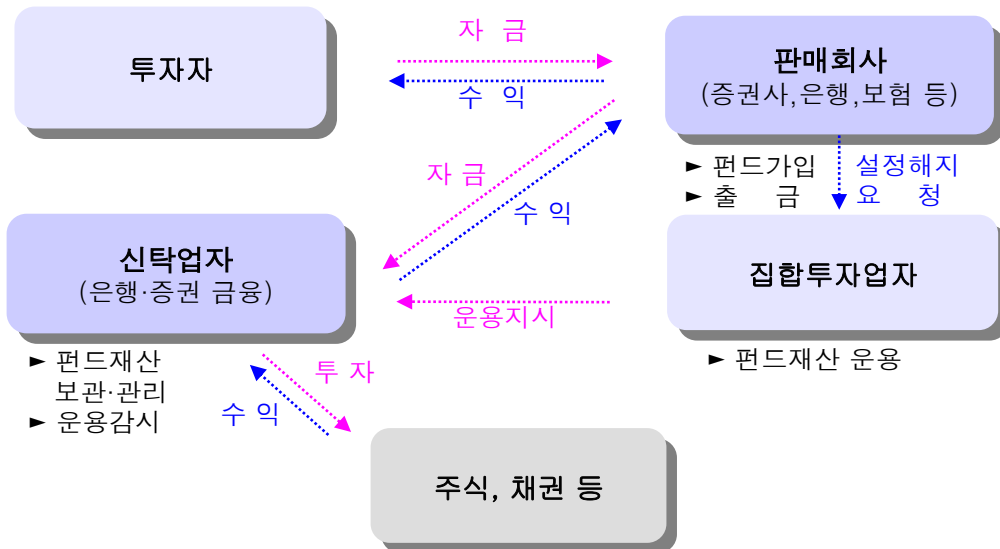
[2024.07.26 현재 / 단위 : 백만원, %]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 산	기타			
대한	1,545	2,637	0	0	0	0	0	0	0	96	1,105	5,383
민국	(28.71)	(48.99)	(0)	(0)	(0)	(0)	(0)	(0)	(0)	(1.78)	(20.53)	(100)
자산	1,545	2,637	0	0	0	0	0	0	0	96	1,105	5,383
합계	(28.71)	(48.99)	(0)	(0)	(0)	(0)	(0)	(0)	(0)	(1.78)	(20.53)	(1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신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회사 연혁	1996.08. 신영투자신탁운용(주) 설립 1996.08. 증권투자신탁 운용업 허가 (증업45332-235) 1997.05. 투자자문업등록 (등록번호 제44호, 증업41299-150) 1997.06. 투자일임업 허가 (증업41299-172) 1999.01. 자산운용회사 등록 (등록번호 9, 감독 7 6114-34) 2000.12. 유상증자 20억원 (자본금320억원) 2009.02. 신영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15.10.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23.12. 종합자산운용사 인가
자본금	320억
주요주주 현황	신영증권(주) (85.9%), 코리안리재보험(주) (9.4%), 서울보증보험(주) (4.7%)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현황	신영증권, KB국민은행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제28기 2024.03.31	제27기 2023.03.31	계정과목	제28기 2023.04.01~ 2024.03.31	제27기 2022.04.01~ 2023.03.31
현금 및 예치금	2,565	401	영업수익	28,168	20,579
유가증권	151,624	137,816	영업비용	12,414	12,870
유형자산	5,875	6,092	영업이익	15,754	7,709
기타자산	11,726	11,719	영업외수익	1,117	1,336
자산총계	171,791	156,028	영업외비용	50	63
예수부채	862	163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6,822	8,982
기타부채	5,184	3,480			
부채총계	6,046	3,643			
자본금	32,000	32,000			
이익잉여금	134,201	120,872	법인세비용	3,493	2,02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56	-487			
자본총계	165,745	152,385	당기순이익	13,329	6,962
부채와 자본총계	171,791	156,028			

라. 운용자산 규모 (2024.03.29 현재 / 단위 : 억원 / 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 권			MMF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재간접	실물 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설정액	22,535	7,628	197	471	0	0	0	0	611	0	31,44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KB국민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1599-9999
홈페이지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⑦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⑧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⑨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⑩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02-6714-4600
홈페이지	www.hanais.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자산평가	에프엔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강서구 마곡 중앙2로 61 ☎ 02-721-5300
연락처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 ▶ 총 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 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신영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syfund.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

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2015년1월1일 이후).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결산서류는 1.재무상태표, 2.손익계산서, 3.자산운용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임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지분증권거래〉	1)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 -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 대비 수익 - 거래유형별 매매체결 능력의 우수성 -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및 자금결제의 위험성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2) 선정방법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월 평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 3) 평가항목 - 자료 및 정보의 질, 펀드 성과 기여도, 세미나 개최 및 기업탐방 주선 등의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과 주문집행의 정확성, 체결단가의 적합성, 정보사항의 신속성,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태 및 자금 결제의 안정성 및 업무 담당자의 역량 등 주문집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채무증권거래〉	1)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 -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 대비 수익 - 거래유형별 매매체결 능력의 우수성 -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및 자금결제의 위험성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2) 선정방법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 반기 평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 3) 평가항목 - 호가경쟁력, 신속성 및 정확성, 호가 투명성, 가격 대응 신속성실성, 세미나 주선, 시장정보 및 뉴스, 호가 대응력, 채권종류별 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장내파생상품거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특성 및 상기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운용총괄책임자 및 채권운용본부장이 결정하여 거래할 수 있음
------------	--

(주 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 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에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수익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 목의 주가나 주가 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위험평가액	법 시행규칙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